

공

고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47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호	42-2016-20-0000235	300세*호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6. 9. 8. ~ 2026. 10. 7.)
문*찬	42-2011-20-0000112	301조*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이*민	42-2018-20-0000332	343대*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2길		
장*실	42-2016-20-0000208	300윤*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정*권	42-2016-20-0000214	320만*호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두호3길		
최*숙	42-2003-20-0000061	317청*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한*자	41-2016-30-0000274	312풍*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무양로		
김*용	42-2008-20-0000253	700해**A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대안2길		
(주)오션**브	42-2018-50-0000372	310등*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6. 9. 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